

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기간	. . . ~ . . .	법인명	
----	---------------	-----	--

※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.

[illegible][illegible]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7조의6제4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의
하
하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① 성명란, ② 주민등록번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2. ③ 발행법인란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명을 적습니다.
3. ④ 집합투자증권수란은 배당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수를 적습니다.
4. ⑤ 액면가액란은 집합투자증권의 액면가액을 적습니다.
5. ⑥ 배당일란은 배당지급일을 적습니다.
6. ⑦ 소유집합투자증권수란은 법 제87조의6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 등에 통보하는 소유집합투자증권수를 적습니다.
7. ⑧ 액면가액합계액란은 ④란의 집합투자증권수란에 ⑤란의 액면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8. ⑨ 구분란은 법 제87조의6에 따라 5%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"5% 분리과세"로 적으며, 분리과세만 적용되는 경우 "분리과세"로 적습니다.
9. ⑩ 배당소득란, ⑪ 배당소득세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.